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동차민원과-678
등록일자	2016.1.7.
결재일자	2016.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민원과장	안전교통국장		
이미션	우병훈	박만수	01/07 代신동명		
협조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안정화를 위한 -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추진계획

2015년 민원 처리실적

○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15.12.31현재)

구분	합계(건)	양도.양수	(변경)허가	허가증재발급	차고지 설치확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015년	568	230	181	40	67	50
2014년	680	270	177	36	133	64
2013년	767	316	199	14	167	71

○ 기타 민원 처리 현황

-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 : 30대

2016년 업무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6.1.1~ 2016.12.31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주선사업

○ 주요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증차, 양도양수 및 변경 허가
-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주기적) 관리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관리 등

2016. 1. .

강 남 구
(자 동 차 민 원 과)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추진계획

화물차량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조기 안정화하기 위하여 공급기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화물자동차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제43조 제2항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3조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등

II 화물운수사업 업체 현황

(2015.12.31현재)

구분	합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소계)	용달화물			주선업(일반/이사)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소계	일반	이사	일반/이사
업체수	818	71	64	7	165	466	12	454	113	59	48	6
차량대수	2,777	1,942	1,933	9	165	671	217	454	-	-	-	-

III 2015년 추진실적

- 민원처리 현황

(2015.12.31현재)

구분	합계(건)	양도.양수	(변경)허가	허가증재발급	차고지 설치확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015년	568	230	181	40	67	50
2014년	680	270	177	36	133	64
2013년	767	316	199	14	167	71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 현황

(2015.12.31현재)

구 분	기 간	허가신청대상	허가신청처리	미신청
합 계		122명	95명	27명
2015년 재허가 (2013년 허가자 대상)	2015.04.01~2015.06.30	33명	30명	3명
2014년	2014.11.10~2014.12.30	39명	33명	6명
2013년	2013.05.01~2013.06.30	50명	32명	18명

연도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수기 신청분)

(2015.12.31현재)

구 분	기 간	신청차량(대)	지급액(천원)	비 고
합 계		465	111,734	
2015년	2014.12.1.~2015.11.31	116	26,300	
2014년	2013.12.1.~2014.11.31	126	31,674	
2013년	2012.12.1.~2013.11.31	223	53,760	

IV 추진계획

추진 기간 : 2016. 1 ~ 2016. 12. 31

대 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

주요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증차)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및 변경 허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확보 안내
- 화물운수사업자 주기적신고 안내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관리 등

화물자동차운송 및 주선사업 신규허가 : 신규공급(허가) 불가

▷단, 아래 특수(작업형)차량에 대하여 신규 및 증차 허용 >

- ①피견인차량(덤프트레일러 제외) ②현금수송용(밴형)차량 ③노면청소용차량
 ④청소용(생활폐기물)차량(건설공사폐기물은 제외) ⑤살수용차량
 ⑥자동차수송용특별제작차량 ⑦최대적재량100톤이상 특수용도형차량
 ⑧석유류수송용, 화학물질수송용차량(탱크로리) ⑨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차량

**

○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구 분 \ 업 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화물자동차 종류	○최대적재량 5톤이상 의 화물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2대이상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 ○중형 특수자동차 ○이산화물의 운송을 위한 적재량 5톤	○최대적재량 1톤이하 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항목	허가기준
사무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산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
상용인부	○ 2명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변경허가

○ 양도·양수를 통한 허가 ⇒ 2년 경과후 가능

※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소유대수 1대) 6개월 경과 후 가능

- 차고지 관련 변경 허가
- 사업계획변경 증차 및 감차, 사용본거지 변경허가
- 사업용화물자동차 구조변경에 따른 허가 등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안내

-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확인 안내문 발송
 - 차고지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 차고지 재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 행정 서비스 제공
- 시 기 : 매월초 발송
- 대 상 : 전월말 기준 차고지 만료자 , 차고지 사용기간 도래 운송사업자
※ 2015.12월말 기준 차고지 만료자 일괄통보 (총 32명)
- 면제대상 :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 용달사업자

□ 화물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안내

- 2016년도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되는 운수사업자 안내문 발송
 -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여 기한내 신고완료 되도록 홍보
- 시 기 : 1차 2016년도 도래자 일괄발송, 2차 기간도래 전월에 발송
- 신고대상 : 총 147명(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57명 및 주선사업자 90명)
※ 화물자동차 1대 보유 운송사업자는 제외
- 신고기간 : 화물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허가일자 기준 3년 경과 후 3개월 이내)
- 신고내용 : 화물운송 및 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서울시 택시물류과-32486(2015.11.23.)호에 의거]
- 거래기간 : 2012.11월 ~2015년 7월 주유내역 중 의심거래 건
- 조사대상 : 화물운수사업자 190명
- 조사일정: 사업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 소명자료 사실관계확인 및
조사 ⇒ 조사결과 서울시에 행정처분 의뢰

[부정수급 의심거래 5가지 유형]

주유패턴 이상(월말 주유량 급증)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 3회이상 주유)	동일 주유소 단시간 반복 결제
1일 4회 이상 주유	일별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동일 톤급의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 주유 차량

V

기대효과

-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진운수사업 실현에 기여
-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